

# 통합학생인건비 관리 지침

제정 2020. 2. 28.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 문화의 정착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통합관리지정기관” 이라 함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제12의3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본 지침에서는 우리대학을 말한다.
- ② “학생인건비” 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 ③ “전산시스템” 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 ④ “통합관리계정” 이라 함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학생인건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 ⑤ “연구책임자단위” 라 함은 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계정으로만 설정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계정책임자” 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 ⑦ “학생연구원” 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우리대학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신규·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자도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책임과 의무)

-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6. 학생인건비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관리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통합관리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체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협의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4. 학생연구원은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통합관리 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체점검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연구원의 연간활용계획 수립)

- ①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원이 연구에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변경 및 취소)

- ①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협약하여 학생인건비 계정잔액이 증가한 경우
  2. 학생연구원의 학적이 변동되어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3. 학생연구원에게 근로소득 발생, 소득금액 변경 등에 따라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4. 연구책임자의 과제가 중단·해지 등으로 계정잔액이 부족하여 당초 연구참여확약서에서 협약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취소할 수 있다.

1. 학생연구원이 질병·실종·형사소추·학적변동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생연구원의 업무 능력 미달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연구책임자 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참여확약서 상에 명시된 담당업무,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기타확약사항등에 대한 내용 위반한 경우

#### 제6조(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 활용 시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③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7조(학생연구원의 처우)

- ①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 연구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④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소 참여율은 10%로 하며, 30%이상 산정하도록 권장한다.

## 제8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 ①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하며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회계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 ④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은 동 지침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 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연구원 인권 및 권익보호)

- ①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원의 상해·사망에 대비 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학생인건비 유용 행위는 「과학기술기본법(법률)」,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제재 대상 이며, 학생구원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제10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원은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 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지정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관리지정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고충·상담 창구운영)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은 연구참여확약서의 내용 위반, 학생연구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연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처벌·제재)

- ① 학생연구원은 연구책임자가 본 지침을 위반 한 경우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학생연구원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감사팀 등 통합관리 지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 ③ 통합관리지정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부칙(2020.02.28.)

본 제정 지침은 2020.03.01.부터 시행한다.